<bof>

1. [%1](#1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2 2023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3 Points to note when filing corporate tax for 2023)[n]
   1. [%2](#1 주요 세법개정내용)(#2 주요 세법개정내용)(#3 Major tax law amendments)[n]
      1. [1](#1 ==공통사항)(#2 ==공통사항)(#3 ==Common matters) [n]
         1. [3](#1 $(법인세율))(#2 $(법인세율))(#3 $(Corporate tax rate))[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 1. [4](#1 $(최저한세율))(#2 $(세법에서 정한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세율))(#3 $(Minimum applicable tax rate as defined in tax law))[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1. [5](#1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2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3 Major tax law amendments that must be checked) [n]
       1. [6](#1 공평과세 원칙)(#2 공평과세 원칙)(#3 Principle of fair taxation)[n]
          1. [7](#1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법§50의2, 법법§113))(#2 사업을 양수할 때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누적액의 처리 방법 보완)(#3 Supplementary treatment of accumulated losses from the business acquired when transferring a business) [n]

[8](#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2 사업을 양수할 때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누적액의 처리 방법 보완)(#3 Supplementary treatment of accumulated losses from the business acquired when transferring a business) {e9<n>,e10<n>,r11<n>}

[9](#1 적용 요건 및 범위)(#2 적용 요건 및 범위)(#3 Conditions and scope)[n]

{1}(#1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 자산의 70% 이상이면서 순자산의 90%이상인 경우, 양수 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2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사업을 사거나 파는 경우로서 사업을 인수한 날 현재 사업장 자산의 가액이 사업을 판 법인 총자산의 70%이상이면서 그 법인 자본의 90%이상인 경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사업을 인수한 법인의 손실누적액은 새로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수익에서만 공제)(#3 When there is a special relationship as defined in the tax law between individuals who buy or sell a business, and the current business assets' value on the day of acquisition of the business is more than 70% of the total assets of the selling corporation and more than 90% of its capital, the accumulated loss by the acquiring corporation is deductible only from the income of the existing business that the acquiring corporation was previously conducting, not from the income generated in the new business.) {e8<n>,e10<n>,r11<n>}

[10] (#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 [n]

{1}(#1 2022. 1. 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2 2022. 1. 1. 이후 사업을 사거나 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3 Applicable for contracts for buying or selling businesses made after January 1, 2022.) {e8<n>,e9<n>,r11<n>}

* + - * 1. [11] (#1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법법§60의2))(#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기업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의 범위 보완)(#3 Supplementing the scope of companies requiring a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among businesses that transitioned from sole proprietorship to corporate entities) [n]

[12](#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 [n]

{1}(#1 사업 양수도를 통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를 위해 적용대상 범위 보완)(#2 사업 양수도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 범위 보완)(#3 Supplemen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revent actions that evade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through business transfers) {e13<n>,e14<n>,r7<n>}

[13] (#1 적용대상 추가)(#2 적용대상 추가)(#3 Adding scope of application)[n]

{1}(#1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이내))(#2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국내의 법인)(#3 When a sole proprietorship, who is required to obtain a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under the Income Tax Act, converts to a corporate proprietorship, a domestic corporation which acquire a business from that converted corporation.) {e12<n>,e14<n>,r7<n>}

[14](#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1. 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2 2022. 1. 1.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3 Applies from acquisitions of businesses starting January 1, 2022) {e12<n>,e13<n>,r7<n>}

* + - 1. [15](#1 일자리 창출 지원)(#2 일자리 창출 지원)(#3 Support on job creation) [n]
         1. [16] (#1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의7))(#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 일시적 증대 및 적용기한 연장)(#3 Temporary increase and extension of tax deduction benefits applied to companies that increase employment) [n]

[17] (#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22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 ‘22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존보다 100만원 더 공제)(#3 For hiring young, disabled, and workers aged 60 or older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ntil 2022, an additional deduction of KRW 1 million applies compared to the previous amount.){e18<n>,e19<n>}

[18](#1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2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3 $(Amount of employment increase tax deduction))[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17<n>,e19<n>}

[19](#1 세액공제 적용기한)(#2 세액공제 적용기한)(#3 Tax deduction application period)[n]

{1}(#1 적용기한 ’24.12.31.까지 3년 연장)(#2 적용기한 ’24.12.31.까지 3년 연장)(#3 Extended by 3 years until December 31, 2024){e17<n>,e18<n>}

* + - * 1. [20] (#1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3 Introduction of new requirements and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tax deductions for companies that convert non-regular full-time workers to regular full-time workers) [n]

[21](#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적용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1년 연장)(#3 Adjustment of tax deduction criteria and a 1-year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middle market enterprises that convert non-regular full-time workers to regular full-time workers){e22<n>,e23<n>,e24<n>,e25<n>}

[22] (#1 세액공제 금액)(#2 세액공제 금액)(#3 Amount of tax deduction)[n]

{1}(#1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특수관계인은 제외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1명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해당 근로자가 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제외))(#3 Tax deduction of KRW 10 million for each non-regular full-time worker converted to regular full-time status for small enterprises, KRW 7 million for middle market enterprises per worker (excluding cases where the employee has a special relationship as defined in the tax law)){e21<n>,e23<n>,e24<n>,e25<n>}

[23](#1 세액공제 요건)(#2 세액공제 요건)(#3 Tax deduction requirements) [T,e21<n>,e22<n>,e24<n>,e25<n>]

{1}(#1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1.~12.31.까지 정규직 전환)(#2 =20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2.12.31.까지 정규직 전환)(#3 =Non-regular full-time workers as of June 30, 2021, is converted to regular full-time workers by December 31, 2022) {n}

{2}(#1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신설))(#2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직원의 수가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지 않을 것 (신설))(#3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working in the company should not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newly established)) {n}

[24](#1 세액공제 적용기한)(#2 세액공제 적용기한)(#3 Tax deduction application period)[n]

{1}(#1 2021.12.31. → 2022.12.31.)(#2 기존 2021.12.31.까지에서 2022.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3 Deadline is extended from December 31, 2021, to December 31, 2022.) { e21<n>,e22<n>,e23<n>,e25<n>}

[25] (#1 세액공제 추징금액)(#2 공제받은 세금 중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3 Amounts of tax deducted that may be additionally collected by the tax office in the future) [n]

{1}(#1 세액공제액)(#2 공제받은 세금)(#3 Deducted taxes){ e21<n>,e22<n>,e23<n>,e24<n>}

* + - * 1. [26](#1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2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3 Easing tax deduction requirements for companies employing women on career breaks) [n]

[27](#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완화)(#2 경력이 단절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기간 요건 완화)(#3 Easing career break period requirements for women on career breaks) {e28<n>,e29<n>,r30<n>}

[28](#1 세액공제 요건)(#2 세액공제 요건)(#3 Tax deduction requirements)[n]

{1}(#1 퇴직 후 3년 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2 퇴직 후 3년 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3 Employment in the same industry for at least 3 years within 15 years → Employment in the same industry for at least 2 years within 15 years) {e27<n>,e29<n>,r30<n>}

[29](#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1. 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2 2022. 1. 1. 이후 2년 이상 15년 이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3 Applicable from the hiring of women with career gaps of at least 2 years and within 15 years after January 1, 2022) {e27<n>,e28<n>,r30<n>}

* + - * 1. [30](#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조의4, 조특령 §27조의4))(#2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3 Establishment of post-management regulations for tax deductions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n]

[31](#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3 Establishment of post-management regulations for tax deductions on social insurance premiums for SMEs and a 3-year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e32<n>,r26<n>}

[32](#1 세액공제액 추가납부)(#2 법인세에서 뺀 세액을 다음연도 이후에 추가납부)(#3 Additional payment of deducted taxes from corporate income tax in subsequent years) [n]

{1}(#1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가납부)(#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년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3 If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working in the company decreases after receiving the tax deduction for social insurance premiums, you cannot claim the deduction from the year of decrease, and the deducted tax must be additionally paid.) {e31<n>,r26<n>}

* + - 1. [33](#1 조세제도 합리화)(#2 조세제도 합리화)(#3 Rationalization of the tax system) [n]
         1. [34] (#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법령§95⑤))(#2 재해손실을 입은 기업의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의 신청기한 연장)(#3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system that deducts a certain amount from the corporate tax for companies suffering from losses due to disasters) [n]

[35](#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신청기한 연장)(#2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기한 연장)(#3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to enhance tax convenience) {e36<n>,e37<n>,r38<n>}

[36](#1 신청기한 연장)(#2 신청기한 연장)(#3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n]

{1}(#1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2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3 Changed from 1 month to 3 months from the date of the disaster occurrence) { e35<n>,e37<n>,r38<n>}

[37](#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2.15.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2 2022.2.15. 이후 신청하는 것 부터 적용)(#3 Applicable from filing made after February 15, 2022){ e35<n>,e36<n>,r38<n>}

* + - * 1. [38] (#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하한 신설(법법§75))(#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 최소금액 신설)(#3 Establishment of a minimum amount of penalty tax for cases of non-submission or insufficient submission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n]

[39](#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3 Rational adjustment of the penalty tax for cases of non-submission or insufficient submission of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e40<n>,e41<n>,r34<n>}

[40](#1 가산세 계산식)(#2 가산세 계산 식)(#3 Penalty tax calculation formula) [T,e39<n>,e41<n>,r34<n>]

{1}(#1 =MAX [법인세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2 =MAX [공제 전 법인세액 × 5%, 매출액 × 0.02%)(#3 =MAX [Pre-deduction corporate tax amount × 5%, Sales amount × 0.02%]) {n}

{2}(#1 =법인세 신출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2 =공제 전 법인세액: 세법 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것)(#3 =Pre-deduction corporate tax amount: Multiply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by the current year's net profit according to the tax law) {n}

[41](#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Pre-deduction corporate tax amount: Multiply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by the current year's net profit according to the tax law)[n]

{1}(#1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2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공제 전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3 Applicable starting from business years commencing after January 1, 2022, even in cases where there is no pre-deduction corporate tax amount) {e39<n>,e40<n>,r34<n>}

* + - * 1. [42](#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법령§3①(5),§44의2③,§111①(17)))(#2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3 Amendme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whe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employers and employees jointly establish and operate a fund to pay retirement benefits to employees) [n]

[43](#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사업자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함.)(#2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이자소득과 달리 미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3 When SME employers and employees jointly establish and operate a fund to pay retirement benefits to employees, the business is not considered a profit-making business under tax law. The entire amount borne by the operator in operating this business is fully recognized as expenses, and interest income generated from this business is not subject to advance taxation, unlike other interest income.) {e44<n>,r45<n>}

[44](#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4.14.(｢근로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2 2022.4.14. 부터 시행)(#3 Effective from April 14, 2022) {e43<n>,r45<n>}

* + - * 1. [45](#1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법령§44②))(#2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 명확화)(#3 Clarification of the method for calculating retirement benefits) [n]

{1}(#1 직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2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중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 퇴직급여 지급 시 근무연수는 직전 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함)(#3 If executives or employees receive and pay retirement benefits in advance, the length of service for the next retirement benefit payment is calculated starting from the day after the previous payment date.) {r42<n>}

* + - * 1. [47](#1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규정 정비(법령§120의18②))(#2 하나의 실체로 연결되어 장부를 작성하는 법인 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이나 손실을 나중에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 정비)(#3 Establishing regulations governing the recognition of profits or losses at a later time when assets are transferred between corporations that consolidate their financial statements as a single entity) [n]

[48](#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은 포함됨을 명확화하고,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2 하나의 실체로 연결하어 장부를 작성하는 법인 간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거래한 자산이 소각되는 경우는 이익이나 손실을 즉시 인식하고, 하나의 실체로 보아 연결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법인 간 거래한 자산을 다른 연결된 법인에 파는 경우는 이익이나 손실을 나중에 인식하도록 함)(#3 In cases of transactions between corporations that consolidate their financial statements as a single entity and where the assets traded are consumed, profit or loss is recognized immediately. When assets traded between corporations consolidated as a single entity are sold to another consolidated entity, profit or loss is recognized at a later time.) {e49<n>,r34<n>,r38<n>}

[49](#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3 Applicable from business years commencing after January 1, 2022) {e48<n>, r34<n>,r38<n>}

* + - * 1. [50](#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2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의 투자세액공제 배제)(#3 Exclusion of investment tax deductions for amounts received as customers' donation) [n]

[51](#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공사부담금(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2 공사부담금(전기사업, 도시가스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법인이 그 사업에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하는경우에 적용 받는 세금 혜택 적용 배제)(#3 Amounts received as customers' donation (the amounts received by Korean corporations engaged in businesses such as electric power and city gas for the purpose of investing in specific facilities, from recipients or beneficiaries of such facilities) are excluded from tax benefits when invested.) {e52<n>,r53<n>}

[52](#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2 2022.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3 Applicable from investments made after January 1, 2022){e51<n>,r53<n>}

* + - * 1. [5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법 §100의32))(#2 투자 및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보완)(#3 Enhancing the corporate tax system to promote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n]

[54] (#1 차기환류적립금)(#2 법인의 이익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3 Amounts of corporate profits expected to be spent in the following year) [n]

{1}(#1 설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 설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3 Setting the period for 2 years instead of 1 year.) {e55<n>,e56<n>,e57<n>}

[55](#1 이월결손금)(#2 이월된 손실누적액)(#3 Accumulated losses carried forward)[n]

{1}(#1 기업소득 차감항목인 이월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60% 한도 적용, 법인세법§13①)”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결손금(60% 한도 미적용)”으로 개정)(#2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이월된 손실누적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손실누적액 (60% 한도 적용)”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공제 가능한 손실누적액(60% 한도 미적용)”으로 개정)(#3 Amendment from "accumulated losses carried forward from income of the business year (subject to a 60% limit)" to "accumulated losses carried forward from income of the business year deductible in profits (without a 60% limit)" for deducting accumulated losses carried forward from corporate income.) {e55<n>,e56<n>,e57<n>}

[56](#1 임금증가액)(#2 임금증가액)(#3 Wage increase amount)[n]

{1}(#1 기업소득 차감항목인 임금증가액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시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판단)(#2 기업이 증가시킨 직원 급여는 투자 및 상생을 위해 과세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데, 그 적용대상 근로자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직원은 제외하며,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단위로 환산하여 판단)(#3 Wages increased by companies are deductible from income taxed for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excluding employees with annual total salaries of KRW 80 million or more. In the case of employees with less than 1 year of service, total wages are assessed on an annual basis.) {e54<n>,e55<n>,e57<n>}

[57](#1 제도시행 시기)(#2 제도시행 시기)(#3 Implementation date of the system)[T,e54<n>,e55<n>,e56<n>]

{1}(#1 =2021.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2 =2021.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법인의 이익 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부터 적용)(#3 =Applicable from profits accrued in business years ending on December 31, 2021, and expected to be spent in the following year.) {n}

{2}(#1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3 =Applicable from business years commencing after January 1, 2022.) {n}

* + - * 1. [58](#1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2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3 Revision of the tax reduction conditions related to headquarters relocation) [n]

[59](#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세액감면 요건에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추가)(#2 세액감면 요건에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추가)(#3 Adding minimum investment amount and workforce criteria to the tax reduction requirements){e60<n>}

[60](#1 $(지방이전 세액감면 종전개정))(#2 $(지방이전 세액감면 종전개정))(#3 $(Previous revision for tax reduction related to headquarters relocation))[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소프트웨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59<n>}

* + - 1. [61](#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2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3 Expansion of tax support for small and venture businesses) [n]
         1. [62]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2 중소기업이 창업한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 Expansion of the tax reduction and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startups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n]

[63](#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2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3 Relaxation of the livelihood-based startup criteria and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by 3 years) {e64<n>,e65<n>,r66<n>,r69<n>}

[64](#1 세액감면 요건)(#2 세액감면 요건)(#3 Tax reduction requirements)[n]

{1}(#1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2 매출액 연간 4,8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3 Annual sales revenue of less than KRW 48 million → less than KRW 80 million) {e63<n>,e65<n>,r66<n>,r69<n>}

[65](#1 세액감면 적용기한)(#2 세액감면 적용기한)(#3 Tax reduction application period)[n]

{1}(#1 2021.12.31. → 2024.12.31.)(#2 2021.12.31. → 2024.12.31.)(#3 December 31, 2021 → December 31, 2024) {e63<n>,e64<n>,r66<n>,r69<n>}

* + - * 1. [66](#1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7의4))(#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3 Expansion of tax deductions for mutual cooperation payment amounts) [n]

[67](#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2 원활한 납품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3 Expanding support by relaxing tax deduction requirements and increasing in deduction rates for smooth delivery payments){e66<n>,r62<n>}

[68](#1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3 $(Tax deduction for mutual cooperation payment amounts))[n]

{1}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67<n>}

* + - * 1. [69](#1 성과공유 중소기업과세특례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령§17))(#2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 Expansion of tax incentives appli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pay performance bonuses and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n]

[70](#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2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3 Relaxation of tax incentive requirements appli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pay performance bonuses and an increase in the deduction rate for such enterprises) {e71<n>,e72<n>,e73<n>,e74<n>,r66<n>}

[71](#1 경영성과급 요건완화)(#2 경영성과급 요건완화)(#3 Relaxation of performance bonus requirements)[n]

{1}(#1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삭제)(#2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적용)(#3 Application even for performance bonuses paid by companies that have not generated operating profits) { e70<n>,e72<n>,e73<n>,e74<n>,r66<n>}

[72](#1 공제율 상향)(#2 공제율 상향)(#3 Increase in deduction rate)[n]

{1}(#1 경영성과급의 10% →15% 세액공제)(#2 경영성과급의 10% →15% 세액공제)(#3 Tax deduction of 10% → 15% for performance bonuses) { e70<n>,e71<n>,e73<n>,e74<n>,r66<n>}

[73](#1 적용기한 연장)(#2 적용기한 연장)(#3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n]

{1}(#1 2021.12.31. → 2024.12.31.)(#2 2021.12.31. → 2024.12.31.)(#3 December 31, 2021 → December 31, 2024) { e70<n>,e71<n>,e73<n>,e74<n>,r66<n>}

[74] (#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Application of amended tax laws)[n]

{1}(#1 2022. 1. 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2 2022. 1. 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3 Applies to performance bonuses pai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fter January 1, 2022){ e70<n>,e71<n>,e72<n>,e73<n>,r66<n>}

* + - 1. [75](#1 신성장산업 등 육성)(#2 신성장산업 등 육성)(#3 Promotion of growth in emerging industries, etc) [n]
         1. [76](#1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조특령 별표7)))(#2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3 $(Support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securing future growth engine)) [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디스플레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n}

* + - * 1. [79](#1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2))(#2 법인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주는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3 Expansion of tax reduction for corporations that transfer or lease technology) [n]

[80](#1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2 법인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주는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3 Expansion of tax reduction for corporations that transfer or lease technology, and extens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by 2 years) [n]

{1} (#1 기술대여소득 감면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2 감면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까지 대상 확대)(#3 Expansion of eligible entities for tax reduction fro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small and middle market enterprises) {e82<n>,e83<n>,r76<n>,r84<n>}

[82](#1 세액감면 적용기한)(#2 세액감면 적용기한)(#3 Tax reduction application period)[n]

{1}(#1 2021.12.31. → 2024.12.31.)(#2 2021.12.31. → 2024.12.31.)(#3 December 31, 2021 → December 31, 2024) {e80<n>,e83<n>,r76<n>,r84<n>}

[83](#1 세액감면 적용시기)(#2 세액감면 적용시기)(#3 Tax reduction timing)[n]

{1}(#1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2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3 Applies to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22) {e80<n>,e82<n>,r76<n>,r84<n>}

* + - * 1. [84](#1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령§21))(#2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에서 투자대상 확대)(#3 Expansion of eligible investments in the application of tax deductions for corporate investments) [n]

[85](#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2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에서 투자 대상 자산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3 Add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cquir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dle market enterprises to the assets eligible for tax deductions applied when businesses make investments.) {e86<n>,e87<n>,r79<n>}

[86](#1 적용대상 확대)(#2 적용대상 확대)(#3 Expansion of eligible entities) [T,e85<n>,e87<n>,r79<n>]

{1}(#1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2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의 기업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세법에서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3 =Patents, utility model rights, and design rights acquired b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dle market enterprises from individuals who are not domestic companies or foreigners (excluding cases acquired from individuals in a special relationship is specified in the tax law)) {n}

{2}(#1 =디자인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2 =디자인권 : 국내의 기업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3 =Design rights: Initially registered as a resul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nducted domestically by individuals who are not domestic companies or foreigners (including commissioned or joint research)) {n}

[87](#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2 2022.2.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3 Applies to patents, utility model rights, or design rights acquired after February 15, 2022) {e85<n>,e86<n>,r79<n>}

* + - 1. [88](#1 OECD 등 국제기준 반영)(#2 OECD 등 국제기준 반영)(#3 Reflec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OECD) [n]
         1. [89] (#1 특정외국법인(CFC)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국조법§27))(#2 국내의 법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3 Strengthening measures against tax avoidance through foreign corporations controlled by domestic corporations) [n]

[90](#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및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2 과세소득 대비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 판정기준 조정 및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국내의 법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확대)(#3 Adjustment of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ratio of tax borne compared to taxable income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foreign corporations controlled by domestic corporations to prevent the transfer of overseas income using trusts) {e91<n>,e92<n>,r93<n>}

[91](#1 세법 개정내용)(#2 세법 개정내용)(#3 Tax law amendments) [T,e90<n>,e92<n>,r93<n>]

{1}(#1 =15%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2 =15%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3 =15% or less → 70% or less of the highest corporate tax rate in Korea (which is 25%)) {n}

{2}(#1 =법인과세 신탁(「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2 =국내의 법인이 맡긴 재산을 세법상 하나의 법인으로 취급하여 국내의 법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3 =Treating properties entrusted by domestic corporations as a single corporation under tax law and adding them to the scope of foreign corporations controlled by domestic corporations.) {n}

[92](#1 개정내용 적용시기)(#2 개정내용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2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3 Applies to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January 1, 2022) {e90<n>,e91<n>,r93<n>}

* + - * 1. [93](#1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50))(#2 세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3 Considering excessive interest on loans between companies with a special relationship defined in tax law as dividends and clarifying the asset and liability allocation method by business in the tax system) [n]

[94](#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 방법 명확화)(#2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 방법 명확화)(#3 Clarification of the allocation of loans and other items with unclear purposes within each business) {e95<n>,r89<n>}

[95](#1 세법 개정내용)(#2 세법 개정내용)(#3 Tax law amendments) [T,e94<n>,e96<n>,r89<n>]

{1}(#1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2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비용에 비례하여 배분)(#3 =When there is no operating profit in a particular business, allocation is made in proportion to business-specific expenses) {n}

{2}(#1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2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의 비율로 구분한 산식에 따라 계산)(#3 =Calculated according to a formula based on the ratio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for the fiscal year) {n}

[96](#1 개정내용 적용시기)(#2 개정내용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3 Applies to fiscal years beginning after January 1, 2022) {e94<n>,e95<n>,r89<n>}

* + - * 1. [97](#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54③))(#2 법인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이자를 조정하는 범위 및 법인의 이자비용을 불인정하는 순서 구체화)(#3 Clarifying the scope of adjusting excessive interest relative to corporate income and the sequence of disallowing corporate interest expenses) [n]

[98](#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2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3 If the adjusted income amount is negative, it is considered as zero.) {e99<n>,e100<n>,r93<n>}

[99](#1 손금불산입 순서)(#2 세법상 비용으로 이자비용을 불인정하는 순서)(#3 Sequence of disallowing interest expenses as expenses under tax law)[T,e98<n>,e100<n>,r93<n>]

{1}(#1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 최근 차입일 우선)(#2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 최근에 빌린 이자 우선)(#3 =In cases of the same interest rate: the most recently borrowed interest comes first) {n}

{2}(#1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2 =이자율 및 자금을 빌린 날이 모두 같은 경우 : 빌린 돈의 규모에 따라 나눠서 계산)(#3 =When the interest rate and the date of borrowing are the same: Calculate based on the amount borrowed.){n}

[100](#1 개정내용 적용시기)(#2 개정내용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3 Applies to fiscal years beginning after January 1, 2022){e98<n>,e99<n>,r93<n>}

* + - 1. [101](#1 세법개정내용 기타)(#2 세법개정내용 기타)(#3 Other tax law amendments) [n]
         1. [102](#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법법§74의2))(#2 회사의 차량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3 Establishment of provisions to impose penalty tax when a company fails to submit a statement for claiming vehicle-related expenses as expenses under the tax law) [n]

[103](#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유도를 위해 가산세 신설)(#2 회사의 차량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하는 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산세 규정 신설)(#3 Establishment of penalty tax provisions to encourage companies to submit truthful statements for claiming vehicle-related expenses as expenses under the tax law) {e104<n>,e105<n>}

[104](#1 가산세 신설)(#2 가산세 신설)(#3 Establishment of penalty tax provisions)[T,e103<n>,e105<n>]

{1}(#1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 1%)(#2 =(미제출) 회사의 차량 관련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한 금액(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 × 1%)(#3 =(Non-submission) Amount recorded in the company's books as vehicle-related expenses (amount reported in corporate tax return) × 1%) {n}

{2}(#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2 =(불성실 제출) 회사의 차량 관련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한 금액(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금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3 =(Untruthful submission) Amount recorded in the company's books as vehicle-related expenses (amount reported in corporate tax return) but different from the facts presented in the statement × 1%) {n}

[105](#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2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3 Applies to fiscal years beginning after January 1, 2022, and applies even when there is no taxable income) {e103<n>,e104<n>}

* + - * 1. [106](#1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법령§92의11③))(#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여 사들이는 경우에 법인의 사업용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요건 강화)(#3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land recognized as corporate business-use land when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etc., acquire land through negotiations with landowners for public projects, etc) [n]

{1}(#1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를 위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를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서 5년 이전인 토지로 변경 (2년→5년)) (#2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등이 공익사업 등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국가의 공익사업이 시작하는 날부터 2년 이전에 산 토지에서 5년 이전에 산 토지로 변경 (2년→5년))(#3 To prevent land speculation, the scope of land to be used for public projects, etc., officially changes from land acquired within 2 years before the start of the government's public project to land acquired within 5 years before the start of the project (2 years → 5 years).) {r102<n>,r108<n>}

* + - * 1. [108](#1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령§42②))(#2 법인의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3 Expansion of the scope of small corporations eligible for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n]

[109](#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범위 확대)(#2 법인의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적용대상, 법인의 차량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 축소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범위 확대)(#3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narrowing the range of corporate vehicle-related expenses recognized as expenses under tax laws, and broadening the scope of small corporations eligible for reducing entertainment expenses recognized as expenses under tax laws.){e110<n>}

[110](#1 $(성실신고 확인제))(#2 $(법인의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3 $(The confirmation of compliant return)) [n]

{1}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109<n>}

* + - * 1. [11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령§3①))(#2 경제적 이익의 추구 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사업의 종류 추가)(#3 Adding types of businesses that are not profit-oriented) [n]

[112](#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2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선박의 선급을 부여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3 Excluding businesses related to the issuance or maintenance of ship classification for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e revenue business of non-profit organizations) {e113<n>,r108<n>,r106<n>}

[113](#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2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3 Applies to fiscal years beginning after January 1, 2022) {e112<n>,r108<n>,r106<n>}

* + - * 1. [114] (#1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변경(국기령§27의4))(#2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이자율 변경)(#3 Change in the penalty tax interest rate due to non-payment of taxes by the due date) [n]

[115](#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2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3 Reducing the interest rate on penalty tax due to non-payment of taxes until the payment deadline from 0.025% per day to 0.022% per day for the relief of the taxpayer's burden) {e116<n>,r111<n>,r108<n>}

[116](#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2. 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2 2022. 2. 15. 이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가산되는 것부터 적용.)(#3 Applies to taxes not paid until the payment deadline starting from February 15, 2022) {e115<n>,r111<n>,r108<n>}

* + - * 1. [117](#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인정범위 확대(법령§19))(#2 회사가 자사 주식을 낮은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임직원 등이 행사함에 따른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확대)(#3 Expanding the scope of amounts recognized as company expenses due to employees and others exercising the right to purchase company shares at a reduced price) [n]

[118](#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추가)(#2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근로자가 행사하여 자사 주식의 시가와 할인된 가격의 차액이 발생하면 회사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함)(#3 Recognizing as a company's expen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discounted price of the company's own shares when employees exercise the right, allowing all employees under relevant laws to purchase company shares at a discounted price for a specified period, for the attraction of excellent personnel and employee welfare support.) {e119<n>,r114<n>}

[119](#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2. 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2 2022. 2. 15. 이후 회사가 관련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근로자가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3 Applies to employees exercising the right to purchase company shares at a discounted price for a specified period starting from February 15, 2022) {e118<n>,r114<n>}

* + - * 1. [120](#1 기부금 대상 시설 추가(법령§39①))(#2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 대상 시설 추가)(#3 Adding eligible facilities for donations recognized as expenses in tax laws) [n]

[121](#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복지지원법」 §31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을 추가)(#2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10%를 한도로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금 대상 시설에 관련법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을 추가)(#3 For the promotion of donations, adding youth welfare facilities under relevant laws that are recognized as expenses, with a limit of 10% of taxable income.) {e112<n>,r117<n>}

[122](#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3 Applies to fiscal years beginning after January 1, 2022) {e121<n>,r117<n>}

* + - * 1. [123](#1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법령§80의2))(#2 스팩(SPAC: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가 소멸하면서 기업을 인수한 경우 세법상 적법한 인수로 보는 요건 구체화)(#3 Clarifying the criteria for considering the acquisition of a company through the dissolution of a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a company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another company) as a legitimate acquisition under tax laws) [n]

[124](#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2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소멸하면서 기업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 지금 과세해야 하는 소득을 나중에 과세함으로써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 도입)(#3 Introducing a system that defers the taxation of income for companies established to acquire businesses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capital acquisition for small innovative enterprises not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e125<n>,e126<n>,r127<n>}

[125](#1 세법 개정내용)(#2 세법 개정내용)(#3 Tax law amendments)[n]

{1}(#1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보유요건 배제,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2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 배제,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 배제,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에 인수된 법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건 배제)(#3 Exclusion of the requirement for compani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businesses to operate for more than one year, exclusion of the requirement for shareholders of compani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businesses to hold stocks for a certain period, exclusion of the requirement for corporations acquired by compani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cquisition to continue their existing businesses.) {e124<n>,e126<n>,r127<n>}

[126](#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tax law)[n]

{1}(#1 2022. 1. 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2 2022. 1. 1. 이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3 Applicable for acquisitions made after January 1, 2022) {e124<n>,e125<n>,r127<n>}

* + - * 1. [127] (#1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104의24))(#2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등)(#3 Expanding tax reduction benefits for companies returning to the domestic market after expanding overseas) [n]

[128](#1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2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3 Relaxation of the domestic return deadline requirement) [n]

{1}(#1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2년 내 국내 신･증설)(#2 해외사업장을 팔거나 폐쇄 또는 축소시킨 후 1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 2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3 Establishing or expanding a domestic business within 2 years after selling, closing, or downsizing overseas operations){e129<n>,r131<n>}

[129](#1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통한 복귀 시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2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하여 복귀 시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3 $(When starting or reopening a business domestically, specify eligible income for tax reduction))[n]

{1}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e128<n>,r131<n>}

* + - * 1. [131](#1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관련 사용률 신고기준 개선 보완(조특령§104의7))(#2 선박을 이용해 해운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등록 톤수에 따라 징수하는 조세) 관련 사용 비율 신고기준 개선 보완)(#3 Improving and enhancing the declaration criteria for the usage rate related to the taxation exception for companies engaged in shipping operations using vessels (tax levied based on the tonnage of vessels arriving from foreign countries)) [n]

[132](#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공동운항선박에 대한 사용률 기준 개선)(#2 공동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사용 비율 기준 개선)(#3 Improvement in usage rate criteria for vessels jointly operated){e132x1<n>,e132x2<n>,r127<n>}

[132x1](#1 세법 개정내용)(#2 세법 개정내용)(#3 Tax law amendments)[T, e132<n>,e132x2<n>,r127<n>]

{1}(#1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으로 나눈 비율)(#2 =화물운송을 위해 선박을 빌려주거나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선박을 공동으로 사용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으로 나눈 비율)(#3 =The ratio obtained by dividing the actual cargo load of a vessel used for cargo transportation or jointly used by two or more companies by the cargo-carrying capacity of that vessel.) {n}

{2}(#1 =적재능력선박의 최대 적재량 또는 컨테이너선은 설계적재능력의 75%)(#2 =선박에 적재가능한 용량의 최대 적재량 또는 컨테이너선은 설계상 적재가능한 용량의 75%)(#3 =For vessels with the maximum load capacity of cargo or container ships, 75% of the design load capacity.) {n}

[132x2](#1 개정세법 적용시기)(#2 개정세법 적용시기)(#3 Effective date of amended tax law)[n]

{1}(#1 2022.2.15.전에 용선(조특령 104조7 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로서 22.2.15.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2 2022.2.15.전에 화물운송을 위해 선박을 빌려주거나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선박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22.2.15.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3 Applicable even for corporate tax returns filed after February 15, 2022, for cases of renting vessels or jointly using one vessel for cargo transportation that occurred before February 15, 2022.) { e132<n>,e132x2<n>,r127<n>}

* + - * 1. [133](#1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28의3))(#2 기업이 투자한 사업용 자산 등의 가치 감소분을 다른 자산의 가치 감소분보다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 종료)(#3 Expiration of the application period for tax benefits that allowed a greater deduction of the decrease in value of business assets invested by companies compared to the decrease in value of other assets) [n]

[134](#1 개정내용 요약)(#2 개정내용 요약)(#3 Summary of amendments)[n]

{1}(#1 중소･중견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1.12.31.로 종료)(#2 중소･중견기업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산(공장, 기계설비 등), 기업이 설비에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 감소분을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해주었으나, 이러한 세제 혜택을 ’21.12.31.로 종료)(#3 For assets used in the busi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tc. (factories, machinery, etc.) and assets invested in equipment, tax benefits that allowed a greater deduction for the decrease in value compared to other assets ended as of December 31, 2021.){r131<n>}

<boe>